제772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금융위원회)	1.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강화)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증자를 위해 제출한 공시서류에 기재된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2.대차거래정보 보관(강화)보관이 필요한 대차거래정보 및 보관방법	1.비중요 2.비중요
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행정처분의 기준(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 기준(취소 등)	1.비중요
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1.비중요
4	어선기관기준 개정안 (해양수산부)	1.배관장치 설치(신설) 기관실 전단격벽에 어창의 드레인을 위하여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 어창 잔류수를 빌지웰까지 유도될 수 있도록 배관 설치	1.비중요
5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해양수산부)	1.배관장치 설치(신설) 기관실 전단격벽에 어창의 드레인을 위하여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 어창 잔류수를 빌지웰까지 유도될 수 있도록 배관 설치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무선설비 설치의무(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선(의무, 현존선 포함) 및 5톤 이상 연안어선(선택)에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디지털선택호출장치 포함)' 설치의무 신설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지도법인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금액(신설) ① 지도법인은 매년 총매출액의 2%를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평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거나, ② 보상한도가 {(소속지도사의 수)×4백만원-(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2.지도법인의 다른 법인 출자 제한 금액(신설) 경영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1.비중요 2.비중요
7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1.평가기관 지정(신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인증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8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1.철도사고 등의 즉시보고 의무 강화(강화) ㅇ철도사고등의 보고대상 : 국토부(관련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ㅇ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사고보고의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 모두가 보고하도록 규정 ㅇ 사고 및 장애 발생 이후 운행재개시 15일이내 종결보고 2.철도차량 동에 발생한 고장 등의 의무보고 강화(신설) 고장보고의무 발생 시 7일이내 보고 3.철도안전 자율보고 내용에 대한 확인·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의무부과(신설) 자율보고내용이 긴급히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하고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함	
9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대형가속기 등의 사전 검토(신설) ○ 대형가속기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 도입 - 방사선 안전 관점에서 설계 등 시설의 적절성 여부가 적기에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근거 마련(법률안 제52조의2 신설)	1.비중요
10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인사혁신처)	1.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요건(강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추천대상자 중 졸업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추천	1.비중요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벌점 부과기준(강화)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를 위반유형에 추가	1.비중요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부당 감액한 납품대금의 지연이자율(신설)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시 부과되는 지연이자의 적용 이율(15.5%)	1.비중요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신설) ○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가 해당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종전 7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9명 이하로 축소(제51조제2항제1호) ○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규정을 삭제(제51조제2항제4호) ○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이사장의 당연직 규정도 삭제(제51조제2항제5호)	1.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건산법상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 2. 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 제한(신설) ○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연임회수를 1회로 제한 3. 운영위원장 선출방식(신설) ○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직접·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 위원으로 선임 4. 안건 사전협의 절차(신설) ○ 정관변경, 보증수수료율 등 국토부 승인사항 및 대규모 투자, 예결산, 기타 운영위원장·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 안건 상정 전 국토부 사전협의를 의무화	
14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환경부)	1.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과 방법(강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기준과 방법을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강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차 폐차후 분리된 폐배터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방법을 규정함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강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인하함	1.중요
16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보건복지부)	1.우수한약 등 확인조사(신설) ○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한약 육성 보조금을 보조받은 우수한약 사업단(민간)이 보조금 목적에 따라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우수한약(규격-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이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우수한약 사업 승인 취소 등(신설)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우수한약 사업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짜 우수한약을 제조하는 등 보조금 지급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 우수한약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함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인계 인수 내용 등의 입력(신설) 폐기물 수출입자가 인계·인수 사항 외에 수입국 통관일자, 운송 선박명, 계량값 등을 추가로 입력토록 함으로써 수출입 폐기물 적정 관리 강화 2.보증금 예탁 및 보증보험 가입관련(신설) 보증금 및 보증보험 보험금액 산정방법, 계약 및 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1.비중요 2.비중요
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강화) ㅇ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공해방지시설, 보조설비 및 1,000kW 미만 구내배전설비를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 2.사용전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강화) ㅇ 해양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기저장장치의 사용전검사 시기 조정 3.정기검사 대상, 기준 및 절차 규정(강화) ㅇ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 4.안전등급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규정(신설)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양호 등급(A)은 검사, 점검시기 조정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불량등급(D)은 패널티 부여 5.안전관리장비 보유(강화)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보유 의무 부여 6.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신설) ○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안전시공교육을 의무화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7.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신설) ○ 시설물관리업체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마련	
1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강화) 화력·복합화력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능력감소) 및 연료전지발전소의 보조설비(용기, 배관)의 변경공사시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포함 2.사용전검사 대상·기준 및 절차 규정(강화)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해양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기저장장치의 사용전검사 시기 조정	
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실증특례 지정 신청 및 반려, 공고 및 통지,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신설) ㅇ 실증특례 신청 절차 및 양식 - 실증특례 신청 자격, 실증특례 신청 관련 의무제출 서류 구체화 ㅇ 접수된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반려 사항 명시 ㅇ 실증특례 지정에 따른 실증 신기술 이용자 통보 규정 ㅇ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 절차 사항 규정 - 유효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의무제출 서류 구체화 2.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신설) ㅇ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실증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책임보험의 만료일, 지급 보험금액 기준 등 세부사항 명시 ㅇ 단,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계획서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실증특례 관리감독 및 결과보고(신설) ㅇ 과기정통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진행과 관련하여 계획 이행사항 등을 관리 감독 할 수 있음 ㅇ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실증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함 4.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및 일시적 중지(신설) ㅇ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증특례 취소 및 일시적 중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 그 밖에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